

제410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1월30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6)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7)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4)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72)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3)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67)
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6)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6)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3)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9)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4)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1)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6)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2)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0)
1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9)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3)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4)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5)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7)
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6)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3)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4)
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2)
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2)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6)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55)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8)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40)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3)
3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9)
3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7)
3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

상정된 안건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6)	2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7)	2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4)	2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72)	3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3)	3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67)	3
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6)	3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6)	3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3)	3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9)	3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4)	3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1)	3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6)	3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2)	3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0)	3
1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9)	3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3)	3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4)	3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5)	3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7)	3
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6)	3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3)	3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4)	3
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2)	3
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2)	3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6)	3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55)	3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8)	3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40)	3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3)	3
3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9)	3
3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7)	3
3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	3

(10시16분 개의) 니다.

○위원장 이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제출된 행정입법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6)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7)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4)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72)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3)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67)
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6)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6)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3)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9)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4)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1)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6)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2)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0)
1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9)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3)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4)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5)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7)
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6)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3)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4)
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2)
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2)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6)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55)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8)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40)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3)
 3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9)
 32.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7)
 3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
- (10시17분)

○위원장 이상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3항까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가지고 의사일정 제4항과 25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도서관 등록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등록관청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하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광특구 지정시설 요건을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전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가지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20항까지 문체부 제1차관 소관 20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3항까지 문화재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총 2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제1차관 소관 법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하게 하려는 것으로, 민간 영역까지 한글 사용을 확장하여 국어 사용 촉진에 기여하고 국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글 사용 권장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행정지도의 주체를 특정하고, 모호하고 포괄적인 행정지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강행규정으로 규정된 행정지도를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안은 작은도서관의 등록 관청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며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에서 운영정지 처분을 삭제하는 등 공공도서관 등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직무계속 규정 마련 및 국제표준자료번호 신청 주체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행

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요건 완화를 통해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촉진하며 법률의 규정을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에서 인력 기준을 완화함에 있어서 사립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국공립 공공도서관 이상의 규모를 갖춘 곳은 사서의 배치가 필요하고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인력 기준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완화된 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6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기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사적 인물들의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지정 및 지정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표준영정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할 필요성이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영정 제작에 신중을 기하여 영정의 정당성 또는 적절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정부표준영정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동법의 목적 및 수단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 정부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정 제작의 심의 요청 주체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저작권 행사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예지 의원안은 영화업자 등이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제고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관련 협회 및 업계 등은 개정안이 영화업자 등에 대한 사실상의 규제 확대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각종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재정지원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종성 의원안은 누구든지 영화상영관 경영자와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 자료의 허위 전송을 공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문제된 박스오피스 부풀리기에 있어 현행법으로는 영화상영관 경영자 외에 이와 공모한 자를 별도로 제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화배급사 등의 공모를 금지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수범 대상을 ‘누구든지’에서 ‘영화업자’로 수정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제14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승수 의원안은 영화 상영등급분류 기준 중 ‘15세 이상 관람가’를 ‘동반 관람가’와 ‘동반 관람제한’으로 나누어 동반 관람제한의 경우 15세 미만의 사람은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관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지나친 선정성이나 폭력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과 미국 및 영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화 관람의 편의성 및 상영관 운영의 효율성, OTT 플랫폼 등 다른 매체와의 규제 형평성 등도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관람객 수 위축 등 영화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사무국을 신설하고 예술인보호관이 예술인 대상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및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신속 정확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원회 사무국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문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현행 예술인신문고의 접수를 담당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직권조사 권한 신설의 경우 직권조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근거가 상당하고 내용이 중대한 경우로 직권조사가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고 예술인보호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므로 직권조사 실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임종성 의원과 이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 영상물에 대해서도 OTT 영상물이나 게임물과 같은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음악영상물의 신속한 유통과 효율적인 음원 홍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 및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사실상 모든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공공기관 및 협회나 대형 온라인 음악서비스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0항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서 간행물을 포함한 문화상품의 사재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행물 사재기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동 제정안에 따르면 간행물 사재기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간행물 사재기와 같은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적극적인 대응 및 근절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간행물 사재기 금지의 주체인 문화상품유통업자는 단체·법인의 대표자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어 출판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 건설공사가 무산된 경우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설공사가 무산된 경우 해당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발굴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등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 개정 시 발굴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이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기념물, 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연유산을 시·도지사가 자연유산 자료로 지정하고 현행 문화재위원회의 천연기념물 분과에서 수행하는 자연유산의 조

사·심의 기능을 자연유산위원회를 신설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내년 5월 17일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추어 법 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법 제41조 등은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자연유산 위원회나 시·도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가지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30항까지 문체부 2차관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입니다.

문체부 2차관 소관 총 10건의 법률안 검토의견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불법 도박을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불법 홀덤펍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를 현행 도박장 개설죄보다 상향할 경우 불법 홀덤펍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전용영업장 외에서 하는 영업 등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상향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현행 행정처분으로도 제재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관광사업, 여행업 등록 등에 있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유예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제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보다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캠핑 인구 증가로 인한 텐트 방치 등 알박기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의 개념을 신설하고 무단으로 설치된 텐트 캠핑카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계곡·산·해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서 이미 금지행위, 방치된 물건의 제거 조치 등을 조항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로 자연발생유원지 개념을 신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내에서의 조치사항에 관광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의 취지입니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도입 취지가 관광객의 과다 유입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시설별 지자체별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새로이 안전관리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정부 제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요건을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적 획일적으로 정하는 관광안내시설 등의 구비요건을 개별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색과 여건에 맞는 관광특구의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은퇴선수 대상 진로교육이나 취업·창업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은퇴선수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은퇴선수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으며 대한체육회의 경우 국가대표 은퇴선수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9항 30항 류호정 의원, 김영배 의원, 이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금액 약정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휴업이나 폐업 시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헬스장, 필라테스장 등이 이용자로부터 선불 이용료를 받고도 폐업한 이후에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와 체육시설업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 가입 대상 업종 범위의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휴업·폐업 시 정당한 사유로 미통지할 경우에 면책사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자의 원활한 생활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사무실이나 물품 보관소, 휴게실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 유희부지 등에 위치한 체육시설에 별도 관리시설을 건축할 경우 체육시설 관련 인허가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지고 조성 비용이 상승하여 지자체의 체육시설 확대 예산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를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오늘 법안 중에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법률 간의 충돌을 조정·정비하기 위한 그런 후속 법률인데 사실은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체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은 국정 과제이기도 하면서 또 여야 간에 공히 지금 그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법사위까지 갔다가 방통위 쪽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 방통위의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총리실에서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정해 준 대로 이렇게 정부의 안이 확정되면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도 방통위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이라든지 또 정부 내에서도 조정이 된 만큼 장관님께서 방통위원장하고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협조를 하셔서 가지고 올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김승수 위원 그리고 정부안 중 도서관법 일부 개정안은 작은도서관 등록관청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전하는 부분하고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요건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도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혜택도 크게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자체로 권한을 넘겨줬을 때 더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렇게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부분도 고려하는 한편으로 정부의 후원적인 또 지원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역할들은 더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먼저 법안심사하시느라고 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관님께서 ‘미술관·박물관 등을 24시간 무료 개방 이런 것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더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21년 2월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은, 김의겸 의원님의 이 법률을 심사한 내용과 함께 전문위원께서 새로운 융복합 형태의 박물관이 등장함에 따라 여기에 대한 많은 부분을 새로이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제언을 하셔서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한번 제언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2021년에 제안했던 부분은 두바이의 자동차박물관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저희가 거의 시범사업적으로 한 장난감박물관식으로 실제 박물관이 가서 눈으로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께서 대출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박물관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무슨 박물관에서 대출을 하나’, ‘그 귀중한 유물들을 가져오면 손상되지 않느냐’라고 아직 융복합 박물관 등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낸 법안은 이런 인식의 공감대를 확실히 얻지는 못해서 아마 21대 국회에서 지금 계류된 상태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지만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문화유물을 구경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박물관 이외에도 국민들께서 실제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끼고 대출도 할 수 있는 융복합 형태의 박물관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 관련 법안이든 정책이든 정비를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이용 위원님.

○이용 위원 법안 관련해서는 아니라 문화재청에다 요청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한 3분이면 괜찮은데요.

○위원장 이상현 예, 3분 해 주십시오.

○이용 위원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조선왕조 왕릉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서 태릉선수촌의 시설 관련인데, 그때 총 18개 시설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는 당초 8개 시설물의 존치를 요청했고 그런데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건축 연한이 가장 오래된 월계관·승리관 같은 시설 4개만 보존 선정을 했었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이용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겠다고 계획에 있었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이용 위원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저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현재 태릉선수촌의 시설물이 쓰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별로 없다는 점이고 특히 태릉선수촌 내에 위치한 실내 빙상장과 또는 국제 스케이트장, 가장 마지막에 2027년에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이용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화재청도 어떻게 보면, 국제규격에 맞는 빙상장이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 올림픽이 끝나고 2027년에 조치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감안을 해서 아마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훈련장을 다음 올림픽까지 유지한다면, 그러면 그에 맞는 시설도 똑같이 기준점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훈련장은 2027년까지인데 훈련에 맞는 시스템은 바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점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 중의 하나가 원형 상태, 원상태 복원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뿐이 아니라 서오릉에 있는 기무사

건물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라든가 이런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단계에서 빙상장 옆의 시설물을 같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훈련장은 2027년까지인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오면 실질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곳은 당장 철거를 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점이나 법적인 검토가 없다면 훈련장과 똑같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시설물도 2027년까지 한 2년 정도 유예를 해 주신다면 학생들이나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좀 더 유익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유네스코에 계속 매년 상황 보고를, 실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철거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맨 마지막까지 놔두는, 존치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현 또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임오경 위원 임오경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내년에 2024년 파리올림픽이 개최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문체부에서 준비한 행사가 100일간 파리에서 한류 열풍을 알리는 K-컬처,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100일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국립발레단의 공연이 있고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K-컬처를 알린다고 하면 우리 것이 먼저 전제적으로 알려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대한민국 한글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서예 그리고

관소리, 농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00일간이라고 하니까 그 100일 동안 문체위 소관기관에 속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것을 진짜 제대로 알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좋은 의견이시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프로그램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잘 정리할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히 우리 전통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빠지지 않게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언론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계속해서 불교계 자승스님이 입적했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문체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고 경위나 내용 등을 조금은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건 전제적으로 문화재청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저희 중무실장이 지금 현재 조계사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변동이 생길 때마다 보고를 할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 경위 같은 경우를 종합해서 저희 문체위원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3항까지 33건의 법률안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 승 수	김 예 지	김 윤 덕	류 호 정
배 현 진	유 정 주	이 개 호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용	이 용 호	임 오 경
임 중 성	전 재 수	홍 익 표	

○청가 위원(1인)

황보승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연 호
진 문 위 원	정 환 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유 인 촌
제 1 차 관	전 병 극
제 2 차 관	장 미 란
기 획 조 정 실 장	강 석 원
문화예술정책실장	유 병 채
국 민 소 통 실 장	박 용 철
대 변 인	강 정 원
감 사 관	구 경 렬
정 책 기 획 관	신 은 향
문 화 정 책 관	정 향 미
예 술 정 책 관	이 은 복
지역문화정책관	최 성 희
콘 텐 츠 정 책 국 장	윤 양 수
저 작 권 국 장	임 성 환
미 디 어 정 책 국 장	강 수 상
체 육 국 장	최 보 근
관 광 정 책 국 장	박 종 택
관 광 산 업 정 책 관	용 호 성
소 통 정 책 관	김 용 섭
소 통 지 원 관	김 현 준
디지털소통관직무대리	윤 태 욱

문화재청

청 장	최 응 천
차 장	이 경 훈
기 획 조 정 관	이 종 희
문화재정책국장직무대리	김 종 승
문 화 재 보 존 국 장	이 종 훈
문 화 재 활 용 국 장	채 수 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8. 22. 박덕흠 · 조수진 · 이현승 · 최춘식 · 이종성 · 송석준 · 정운천 · 하영제 · 김승수 · 강기윤 의원 발의)

8월 23일 회부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8. 23. 정부 제출)

8월 24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28. 조정식 · 안호영 · 김홍걸 · 한정애 · 문정복 · 강선우 · 정일영 · 정성호 · 변재일 · 김주영 · 김병욱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3. 8. 28. 황보승희 · 최영희 · 정우택 · 정운천 · 金炳旭 · 양향자 · 박대수 · 이인선 · 백종현 · 김성원 · 지성호 · 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29일 회부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3. 8. 29. 황보승희 · 지성호 · 조수진 · 김성원 · 金炳旭 · 이인선 · 박진 · 윤한홍 · 유경준 · 홍문표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3. 8. 29. 류호정 · 심상정 · 장혜영 · 배진교 · 이병훈 · 이은주 · 김예지 · 강은미 · 이용 · 김윤덕 · 이상현 · 이개호 · 박용진 · 유정주 · 황보승희 · 배현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30일 회부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이학영 · 이장섭 · 임호선 · 유기홍 · 이재정 · 박홍근 · 정태호 · 조오섭 · 최혜영 · 김성환 · 신영대 · 김교홍 의원 발의)

9월 1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1. 맹성규 · 허종식 · 고영인 · 이학영 · 전해철 · 안규백 · 박성준 · 홍정민 · 허영 · 이소영 · 민병덕 의원 발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1. 김승원 · 강민정 · 신정훈 · 유기홍 · 허영 · 김영배 · 권칠승 · 김병욱 · 조정식 · 한병도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

발의)

(2023. 9. 1. 양기대 · 허영 · 김종민 · 한병도 · 김주영 · 김병욱 · 전해철 · 정태호 · 김영호 · 홍성국 · 전재수 · 이병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4일 회부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이상현 · 김승남 · 안규백 · 조정훈 · 유정주 · 신정훈 · 박정 · 서영교 · 양경숙 · 임오경 · 김홍걸 의원 발의)

9월 5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김영배 · 박용진 · 김종민 · 강병원 · 이장섭 · 김승원 · 안규백 · 이해식 · 정성호 · 민형배 · 유정주 · 홍익표 · 최기상 · 송갑석 의원 발의)

9월 11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12. 이종성 · 배준영 · 전봉민 · 김영식 · 임이자 · 김미애 · 박대수 · 강민국 · 정희용 · 최재형 · 박덕흠 · 조경태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12. 임종성 · 김승남 · 임호선 · 신현영 · 이병훈 · 소병훈 · 강득구 · 권칠승 · 강병원 · 이상현 · 강선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3일 회부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13. 임종성 · 김승남 · 임호선 · 유정주 · 신현영 · 홍익표 · 이병훈 · 소병훈 · 권칠승 · 강병원 · 이상현 · 강선우 의원 발의)

9월 14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9. 14. 이상현 · 신정훈 · 김승남 · 박완주 · 김수홍 · 김두관 · 장철민 · 민홍철 · 김정호 · 전재수 · 박재호 · 한준호 · 최인호 의원 발의)

9월 15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임종성 · 황운하 · 송옥주 · 박상혁 · 유정주 · 임호선 · 이병훈 · 권칠승 · 정태호 ·

홍익표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임종성 · 황운하 · 송옥주 · 박상혁 · 유정주 · 임호선 · 이병훈 · 권칠승 · 홍익표 · 정태호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용 · 김석기 · 이명수 · 김희곤 · 구자근 · 김승수 · 김형동 · 엄태영 · 임이자 · 박정하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용 · 김석기 · 이명수 · 김희곤 · 구자근 · 김승수 · 김형동 · 엄태영 · 임이자 · 박정하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25일 회부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이상현 · 양정숙 · 서영교 · 신정훈 · 김승남 · 양정숙 · 정필모 · 김수홍 · 전재수 · 유정주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이인영 · 최종윤 · 김종민 · 소병훈 · 이형석 · 강득구 · 김두관 · 고민정 · 김병기 · 서영교 · 김정호 · 이상현 · 박용진 · 김병욱 · 유동수 · 허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6일 회부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유정주 · 이소영 · 장경태 · 도종환 · 박정 · 우원식 · 이병훈 · 위성곤 · 이상현 · 김영진 의원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유정주 · 이소영 · 장경태 · 도종환 · 박정 · 우원식 · 이병훈 · 위성곤 · 이상현 · 김영진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유정주 · 이소영 · 장경태 · 도종환 · 박정 · 우원식 · 이병훈 · 위성곤 · 이상현 · 김영진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승수 · 태영호 · 이주환 · 김석기 · 이용 · 성일종 · 구자근 · 이용호 · 박대수 · 황보승희 · 김예지 · 박덕흠 · 지성호 의원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임종성 · 장철민 · 강선우 · 임오경 · 김병기 · 우원식 · 임호선 · 윤미향 · 이동주 · 김민기 · 김원이 · 최기상 · 노웅래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의겸 · 김홍걸 · 김정호 · 조오섭 · 최기상 · 민형배 · 서동용 · 장경태 · 류호정 · 정태호 · 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6건 10월 4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0. 25. 정부 제출)

10월 26일 회부됨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0. 30. 이병훈 · 이용우 · 양향자 · 김철민 · 윤영덕 · 고영인 · 이장섭 · 민형배 · 송갑석 · 이용빈 의원 발의)

10월 31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 류호정 · 이병훈 · 심상정 · 강은미 · 이은주 · 배진교 · 황보승희 · 강성희 · 김윤덕 · 장혜영 · 유정주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 류호정 · 강은미 · 심상정 · 배진교 · 이은주 · 이병훈 · 장혜영 · 강성희 · 김윤덕 · 유정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3일 회부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0. 김예지 · 박대출 · 박덕흠 · 구자근 · 배준영 · 장혜영 · 김상훈 · 최연숙 · 이용 · 송석준 의원 발의)

11월 13일 회부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3. 김영주 · 이학영 · 김교홍 · 한준호 · 신영대 · 장혜영 · 김영진 · 박대수 · 이원욱 · 한정애 · 이동주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3. 김영주 · 이학영 · 김교홍 · 신영대 · 장혜영 · 김영진 · 박대수 · 이원욱 · 한정애 ·

이동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4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 2023. 11. 14.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5일 회부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
발의)**

(2023. 11. 16. 류호정·이수진(비)·강성희·용혜인·
김주영·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
심상정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6. 류호정·이수진(비)·강성희·용혜인·
김주영·배진교·이은주·허숙정·강은미·
장혜영·심상정 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6. 이주환·전봉민·이현승·김학용·
김형동·구자근·정동만·박성민·백종현·
박대수·김용관·안병길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6. 김승수·지성호·박대수·박성민·
이용·박덕흠·태영호·김예지·김성원·
주호영·김영식 의원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 11. 16. 정부 제출)

이상 5건 11월 17일 회부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7. 이용호·장동혁·홍문표·이현승·
박덕흠·최춘식·구자근·엄태영·유경준·
이용·김예지·이종성 의원 발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7. 이용호·장동혁·홍문표·이현승·
박덕흠·최춘식·구자근·엄태영·유경준·
이용·김예지·이종성 의원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7. 이용호·장동혁·홍문표·이현승·
박덕흠·최춘식·구자근·엄태영·유경준·
이종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0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2. 이용·김학용·이명수·김희곤·
구자근·윤창현·김예지·김미애·김형동·
김승수·김석기·임이자 의원 발의)

11월 23일 회부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2023. 11. 23. 이양수·이인선·서범수·박덕흠·
이현승·배준영·이종배·김용관·장동혁·
김형동 의원 발의)

11월 2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3. 8. 22. 윤재옥·양금희·김형동·홍석준·
이인선·김용관·김상훈·정희용·박형수·
김석기·임병헌·金炳旭·김정재·임이자·
주호영·윤두현·송갑석·양향자·이병훈·
김승수·김희국·이용빈·민병덕·김태호·
이양수·조명희·백종현·김영식·강대식·
민형배·이용호·지성호·장동혁·전주혜·
엄태영·윤영덕·구자근·이형석·권은희·
이만희·서일준·이개호·윤재갑·신정훈·
전봉민·박정하·조수진·최승재·한무경·
조은희·김예지·태영호·이종성·배준영·
정경희·이주환·박대출·류성걸·송언석·
서정숙·김성원·김희곤·박성민·유의동·
김영선·강기윤·노용호·김원이·권명호·
조오섭·강민국·서범수·문진석·한정애·
김승남·배현진·최종윤·신원식·서영석·
최춘식·전재수·허종식·홍정민·정운천·
안병길·하영제·이재정·박성준·주철현·
허영·인재근·최연숙·박덕흠·허은아·
최형두·강은미·윤영석·김경만·윤주경·
이원욱·박홍근·김정호·이종배·윤창현·
김성주·김홍걸·조해진·정동만·안호영·
전해철·유상범·이원택·서동용·최영희·
윤준병·우상호·한병도·신영대·양경숙·
조경태·박성중·유정주·안철수·정우택·
박대수·소병훈·홍문표·유경준·남인순·
김미애·송석준·이달곤·권성동·오영환·
안규백·소병철·서영교·이용·김병욱·
유동수·최재형·서범수·임호선·이동주·

윤호중 · 한기호 · 박정 · 민홍철 · 임종성 · 양기대 · 김한규 · 정춘숙 · 최강욱 · 김한정 · 박용진 · 정태호 · 김두관 · 한준호 · 김영호 · 김종민 · 성일종 · 이상헌 · 박수영 · 진선미 · 이현승 · 정점식 · 이채익 · 홍익표 · 강준현 · 김학용 · 윤상현 · 장제원 · 김도읍 · 홍성국 · 하태경 · 김의겸 · 김영주 · 박찬대 · 이정문 · 이학영 · 김상희 · 이철규 · 이용우 · 도종환 · 진성준 · 강선우 · 김주영 · 윤영찬 · 김태년 · 정성호 · 우원식 · 이수진 · 권철승 · 양이원영 · 김기현 · 이상민 · 정진석 · 황희 · 박주민 · 최기상 · 최인호 · 정필모 · 유기홍 · 김민석 · 최혜영 · 이명수 · 맹성규 · 김웅 · 윤한홍 · 김민철 · 이태규 · 홍영표 · 이소영 · 박광온 · 송기현 · 오기형 · 이장섭 · 임오경 · 김성환 · 장경태 · 김수홍 · 송재호 · 위성곤 · 김승원 · 이인영 · 어기구 · 이재명 · 고영인 · 이용선 · 전용기 · 정일영 · 김민기 · 장철민 · 문정복 · 이해식 · 전해숙 · 박범계 · 강병원 · 박재호 · 김용민 · 강훈식 · 권인숙 · 정청래 · 신현영 · 황운하 · 강득구 · 김경협 · 박상혁 · 이수진(비) · 설훈 · 백혜련 · 윤후덕 · 고용진 · 홍기원 · 이탄희 · 김영배 · 권영세 · 변재일 · 서삼석 · 황보승희 · 김병기 의원 발의)

8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8. 30. 한병도 · 김수홍 · 김성주 · 양정숙 · 신영대 · 임호선 · 안호영 · 윤준병 · 김윤덕 · 이원택 · 최강욱 · 윤영찬 · 문진석 · 송재호 · 강병원 · 이해식 · 한준호 · 김의겸 · 박용진 · 진선미 · 허영 · 강성희 · 송기현 의원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3. 8. 30. 정운천 · 최춘식 · 지성호 · 김성원 · 최영희 · 이용호 · 김학용 · 최형두 · 이채익 · 이종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중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허중식 · 김교홍 · 박찬대 · 정일영 · 이성만 · 문진석 · 서영석 · 김병욱 · 김상희 · 유동수 · 김경협 · 홍영표 · 장철민 · 한준호 의원

발의)

9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10. 6. 유의동 · 金炳旭 · 이인선 · 윤두현 · 이용 · 윤주경 · 유상현 · 이현승 · 강대식 · 김형동 의원 발의)

10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2023. 10. 27. 김성원 · 이인선 · 김희곤 · 김용관 · 최영희 · 지성호 · 박대수 · 이주환 · 이종성 · 태영호 의원 발의)

10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3. 김진표 · 오영환 · 안호영 · 김승원 · 백혜련 · 박광온 · 김영진 · 이개호 · 윤영찬 · 전해숙 · 김철민 · 홍기원 · 민병덕 · 양기대 · 위성곤 · 서정숙 · 박성준 · 김병욱 의원 발의)

1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0. 양이원영 · 이동주 · 이용빈 · 정일영 · 김상희 · 신정훈 · 이용선 · 윤준병 · 이수진(비) · 김정호 · 이원택 · 양정숙 의원 발의)

1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0호	2023. 8. 4.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원 사무국 직제	제33687호	2023. 8. 30.	문화체육 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33687호	2023. 8. 30.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87호	2023. 8. 30.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2호	2023. 8. 30.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도서관법 시행령	제33712호	2023. 9. 12.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3712호	2023. 9. 12.	문화체육 관광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712호	2023. 9. 12.	문화체육 관광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713호	2023. 9. 12.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523호	2023. 9. 22.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771호	2023. 9. 26.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3771호	2023. 9. 26.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24호	2023. 9. 26.	문화체육 관광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749호	2023. 9. 26.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5호	2023. 9. 26.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6호	2023. 10. 30.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3837호	2023. 10. 31.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법 시행규칙	제527호	2023. 11. 1.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3858호	2023. 11. 16.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8호	2023. 11. 16.	문화재청